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55751	구상금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0. 6. 16.	
판 결 선 고	2020. 7.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83,54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김정철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받지 못한 금49,883,545원의 구상금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의 채무를 지고 있는 자입니다.

2.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대부업체에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총6군데 대부업체에서 총금49,883,545원에 대하여 보증채무금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갑제 1호증 대부보증계약서) 대위변제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갑제 2호증 대위변제 입금내역서)

-다 음-

C		금7,633,044원
D		금7,622,247원
E	(F)	금8,100,831원
G		금5,872,522원
H		금4,793,370원
I		금8,153,813원
J		금7,707,718원
합계		금49,883,545원

위 내역과 같이 원고는 전액 변제하고 일부 폐업한 회사를 제외한 대부업체에게 완납증명서를 발급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갑제 3호증 완납증명서)원고는 구상금에 대하여 수차례 요청 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이유없이 위 구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위와 같이 원고는 더 이상 피고로 부터의 자진변제를 기대하기가 ~~어려~~위 본건 청구에 이르렀으며, 그리하여 부득이 위 청구금액 및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청구합니다.